상담학연구 발간 규정

개정 : 2019. 03. 20.

1. 학회지 명

본 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를 "상담학 연구(Korean Journal of Counseling)"라고 칭한다.

2. 발간회수

본 회의 학회지는 연 6회 발간(발간 시기: 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0일, 10월 30일, 12월 30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

3. 예 산

본 회의 학회지 발간에 필요한 경비는 외부지원기금과 본 학회의 지원금 및 발표자의 논문 게재료로 충당한다.

4. 게재자격

본 회의 학회지에 논문 게재는 정회원에 한한다(공동연구일 경우, 연구자 중 최소 1인은 정회원이어야 함). 단, 회원과의 공동논문과 본 회에서 특별 기고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한 호의 학회지에 한하여 동일연구자는 2회까지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5. 게재논문의 내용

상담학적 필요성과 시사를 함의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본 회의 학회지는 상담학 분야의 연구논문, '실증 및 경험논문' 또는 '경험적 증거에 기반 한 개관 및 이론논문'을 게재하되 국내외 타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던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투고된 논문은 상담이론, 상담과정 및 성과, 상담자교육 및 수퍼비전, 내담자 변인, 연구방법 및 척도개발, 상담현황 및 상담정책의 6개 주제로 나누어 게재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다.

6. 논문의 투고

본 회의 학회지에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회원은 본 학회지의 원고 작성 요령에 부합되도록 작성된 논문과 필요한 서류들을 한국상담학회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https://kjc.jams.or.kr/)을 통하여 편집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7. 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4인, 편집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추천하여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3) 편집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4) 편집위원회 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의 기능을 보조하고 편집위원장의 유고시 역할을 대행하며,

편집위원회 위원은 상담학의 대표적 연구 분야인, 심리평가, 상담개입, 상담자문, 연구방법론, 아동.청소년 발달, 정신건강, 평가도구개발 등 분야별로 전문가 1인 이상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8. 편집위원회 임원의 자격

학회지 편집위원회 임원의 선임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장은 상담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여야 하며, 선임 시점까지 국제적 수준 및 전국 규모 전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또는 특허 등의 연구 실적이 총 6편 이상인 연구자로서, 상담학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학자로 한다.
2) 부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상담학 및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분야에서 학문적 업적이 뚜렷하며, 상담학의 대표적 연구영역과 관련 분야에서 국제 수준 및 전국 규모 전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또는 특허 등의 연구 실적이 총 4편 이상인 연구자로 한다.

9. 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과 부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의 임기는 선임 시점으로부터 2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0. 편집위원회의 기능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에 관한 다음의 기능을 담당하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 운영 및 학회지 발간 업무를 집행한다.

1) 사전 심사를 통해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의 결정
2)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의뢰
3) 2차 심사(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여부의 확인)
4) 게재가로 심사된 논문의 편집
5) 기타 논문편집에 관련된 사항

11. 논문심사위원의 선임

1)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상담학 및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제적 수준 및 전국규모 전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특허 등의 연구 실적이 총 3편 이상인 자로 한다.
2) 편집위원들이 익명으로 된 각 투고논문에 대해 3인의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심사위원 2인을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12. 논문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 의뢰서, 심사대상 논문, 논문심사 의견서 양식 등을 우송한다.

13. 논문 심사료

심사에 회부된 논문에 대해서는 사전요건심사와 본심사를 포함하여 편당 100,000원의 심사료를

부과한다. 다만 수정 후 재심사로 심사되어 다음호에 재심사 받는 논문에 대해서는 편당 60,000원의 심사료를 부과한다.

14. 논문게재료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학회지 10매 미만은 편당 20만원, 10매~15매는 25만원, 15매를 초과한 논문에 대해서는 16~20매까지는 한 페이지 당 3만원을, 21매부터 한 페이지 당 5만원을 초과한 분량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편당 1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5. 학회지의 구성 및 편집

1) 학회지 내에 본 학회지의 편집위원 명단과 해당 호의 심사위원의 명단을 표기한다.
2) 국문논문은 국문제목, 저자 및 소속, 국문초록, 국문 주요어, 본문, 참고문헌, 원고접수일/수정원고접수일/게재결정일,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 부록의 순서로 구성한다.
3) 영문논문은 영문제목, 저자 및 소속,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 본문, 참고문헌, 원고접수일/수정원고접수일/게재결정일, 국문초록, 국문 주요어, 부록의 순서로 구성한다.
4) 공동논문의 경우, 제 1저자(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저자 명단의 가장 앞에 표기하며, 공동 저자(들)의 경우는 저자 명단에서 제 1저자 다음에 논문에 대한 기여도의 순서대로 표기한다.
5) 공동논문의 경우, 저자주에 교신저자만 명시하도록 한다.
6) 학회지 논문의 게재순서는 주제영역으로 편집위원에서 분류한 후, 주제별로 해당 권호의 심사용 원고를 제출한 순서에 따른다.

16. 논문의 심사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 편집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사전 요건 심사를 통해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를 결정한다.
   (1) 투고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장 주관으로 주제 및 논문체계의 적합성 심사와 표절률 심사를 실시한다. 체계적합성 심사에서는 논문이 상담학 연구지에서 요구하는 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다(서론, 방법, 논의, 참고문헌). 주제적합성 심사에서는 서론에 상담학적인 필요성과 기대 성과, 논의에 상담 연구와 실제에 관련된 시사점, 참고문헌에 상담학연구지를 포함한 상담 영역의 학술지 논문 포함 수준 등을 검토한다. 표절률 심사는 copykiller, copykiller campus, turnitin 등 편집국이 인정하는 프로그램의 표절검사 결과에서 표절률이 30% 이하인지를 검토한다.
   (2) 사전 요건 심사는 2주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사전요건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본 심사 절차를 실시한다.
2) 각 투고 논문에 대한 논문 심사위원 위촉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논문 심사는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의 심사를 담당할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위원이 결정된 후 1주일 이내에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2) 논문 심사에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투고논문이 사전요건심사에 회부된 이후로는 심사료가 환불되지 않는다.
   (3)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투고된 논문은 심사의뢰에 앞서 저자의 신원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삭제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2주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폐기한다.

4) 본 학회에 게재하는 논문은 '실증 및 경험논문' 또는 '경험적 증거에 기반 한 개관 및 이론논문'으로 구별한다.

(1) 실증 및 경험논문의 경우, '이론적 중요성 및 현실적 기여도, 주제의 독창성 및 연구문제의 명료성, 연구문제 제시, 연구 분석, 결과제시의 일관성, 논의전개 및 결론의 적절성, 편집규정 준수 및 기술의 완결성'의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1점부터 7점까지의 평점에 따라 심사항목을 평가한다.

(2) 개관 및 이론논문의 경우, '논지의 창의성 및 명료성, 개관문헌의 범위 및 포괄성, 내용의 타당성 및 전개의 논리성, 이론적 중요성 및 현실적 기여도, 편집규정 준수 및 기술의 완결성'의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1점부터 7점까지의 평점에 따라 심사항목을 평가한다.

(3)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결과를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논문심사 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심사 논문을 검토하고 아래 표의 게재여부 판정기준에 의거하여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 간 의견 불일치가 크다고 판단한 경우, 제 3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이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 종합판정 진행과정

① '게재가'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그대로 게재하도록 한다.

② '수정 후 게재'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편집위원회가 수정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수정을 투고자에게 요구하거나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③ '수정 후 재심'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편집위원회가 수정사실을 확인하고 다음호 논문심사 시에 이전과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④ '게재불가'의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상담학연구에 다시 게재할 수 없다.

(2) 각 심사위원의 세부판정에 대한 진행과정

① '수정 후 게재'의 결과를 받은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승인 혹은 재수정 요청을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수정 후 재심'의 결과를 받은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만약 동일 심사위원이 2회 연속 재심사 판정을 한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③ '게재불가'의 결과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은 요청하지 않고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만을 요청하고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단, 세부판정(초심, 재심 등 포함)에서 두 번의 게재불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합판정 결과에서 수정 후 게재 혹은 수정 후 재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심사를 중단하고 최종판결 "게재불가"로 판정

한다.

(3)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본회는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 8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게재여부 판정기준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재심	**편집위원회 결정**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편집위원회 결정**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가	게재 불가	**편집위원회 결정 (또는 제 3심사위원)**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편집위원회 결정 (또는 제 3심사위원)**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17. 게재예정증명서

본 회는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8. 저작권

논문의 투고 시에 게재 논문의 저작권이 한국상담학회에 귀속됨에 대한 승인 여부를 교신저자에게 확인하며,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상담학회에 자동적으로 귀속된다.

19. 심사결과의 보안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은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를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